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. 6. 27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)

가. 제안이유

○ 「도서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변경하고 작은도서관 기능 추가 및 등록·변경·폐관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(안 제2조)
- 작은도서관 기능 추가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5조)
- 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·폐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- 운영인력 교육 규정 정비(안 제9조)
- 폐기·제적 자료에 대해 무상배포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3조제2항)
-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도서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시행 '22.12.8.) 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·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 및 안 제7조(설립 및 위탁)는 상위법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이며, 안 제5조(기능)는 「도서관법」 제32 조제4호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"상호대차서비스" 및 "다른 도서 관과의 긴밀한 협력"을 추가함.
- 안 제7조의2(등록, 변경등록 및 폐관)는 작은도서관의 등록·변경등록·폐 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항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또한 「도서 관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설함.
- 안 제9조(운영인력)는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도서 관 운영자가 운영인력에 대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함.
- 안 제13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)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 등으로 인해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에 대해 기관, 시설, 단체,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15조(독서진흥)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,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시행 '22.12.8.) 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, 도서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 있음. 또한,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5조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적합성 제고를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150 호

제출연월일: 2023. 5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도서관법」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수 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하여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서관법, 도서관법시행당 개정에 따른인용 조항 변경(안 제2조, 제7조제 2항)
 - 나. 작은도서관의 기능 구체화 및 보완(안 제5조)
- 다.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변경등록, 폐관에 대한 규정 명문화 신설(안 제7조의2)
 - 라.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 근거 보완(안 제9조)
 - 마. 제적·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근거 기준 마련(안 제13조)
 - 바. 작은도서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서관법」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 라. 입법예고(2023. 3. 30.~4. 19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도서관법」제2조제2호"를 "「도서관법」제3조제2호"로 한다.

- 1. "공공도서관"이란「도서관법」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- 2. "작은도서관"이란「도서관법」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
제5조제1호 중 "수집·정리·보존·제공·열람·대출"을 "수집·정리·보존·제공·열람·대출·상호대차 서비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

제7조제2항 중 "「도서관법 시행령」제3조"를 "「도서관법 시행령」제33조"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등록, 변경등록 및 폐관)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폐관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등록증은 반납하여야한다.

제9조제3항 중 "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"를 "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운영위원회"를 "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, 시설, 단체,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제15조의 제목 "(시행규칙)"을 "(독서진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,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,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공도서관 [] 등록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(앞쪽) 30일
도서관의 종류	[] 국립도서관 [] 공공도서관 [] 어린이도서관	[] 공립도서관 [] 작은도서관 [] 장애인도서	<u></u>	[] 사립도서관 [] 기타
설 립 자	성 명 주 소		생년월일 전화번호	
명 칭				
소 재 지			전화번호	
※ 다음 사항은	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민	! 적습니다. 		
등록번호	제	호	등록 연월	일
변경사항	변경 전 변경 후			
[] 「도서관법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 [] 「도서관법」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				
				년 월 일
	Ć	닌청인		(서명 또는 인)
	영등포구청장	- 귀하		
첨부서류	1. 「도서관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 세서	호서식의 공공도서관의 사서・시솥	·도서관자료 명	수수료 없음

2. 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작성 방법

설립자가 법인·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·단체의 명칭을 적고, 생년월일란에는 법인·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.



297mm×210mm[백상지 80g/m²]

;	공공도서관의	의 사	ᅥᆞ시설ㆍ도서	관자료 명세	서	
명 칭						
도서관의 종류	[] 국립도서관		[] 공립도서관		[] 사립	립도서관
		[] 공공도서관 [] 작은도서 [] 어린이도서관 [] 장애인도		t은도서관 t애인도서관	[] 기타
사 서			명 (정사서	명, 준사서	명)	
	부	지	면 적			m²
			전 체 면 적			m²
	건	물	도서관서비스 전 용 면 적			m²
 시 설			공 용 면 적			m²
, <u> </u>	열 람	М	좌 석 수			석
		람 석	열람실 수			
	기계 • 기	l구				
도 서 관 자 료	도 .	서	권			
	연속간행	물	종			
	비도서자	료	종			
	그 밖의 지	·료				

제 호 공공도서관 등록증 1. 명 칭: 2. 소 재 지: 3. 대 표 자 성 명: 생년월일: 4. 등록 연월일: 5. 도서관의 종류: 「도서관법」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 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.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 직인

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* 117-1 700H	= NT 484 142, []410 41840 X41	VECTE OF 1, -18401 OF E	CC CXCV 771 661	(앞쪽)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도서관의 종류	[] 국립도서관	[] 공립도서관	[] 사립도서관
	[] 공공도서관	[] 작은도서관		
	[] 어린이도서관	[] 장애인도서] 기타
등록번호	제 호		등록 연월일	
설 립 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명 칭				
소 재 지			전화번호	
사 유			폐업일	
공공도서관	등록증 분실사유		'	
「도서관법」 신고합니다.	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	니행규칙 제11조제6	항에 따라 위와	같이 폐관을
			년	월 일
		신고인		(서명 또는 인)
	영등포구청장	귀하		

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

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
참부서류 ※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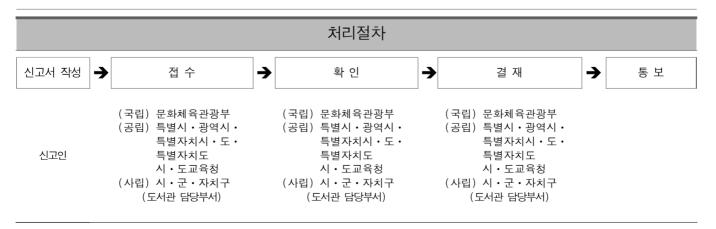
다음

작성방법

설립자가 법인 • 단체인 경우 법인 •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.

유의사항

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



297mm×210mm[백상지 80g/m²]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 2 조 (정 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공공도서관"이란「도서관	1. "공공도서관"이란「도서관
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	법」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
말한다.	서관을 말한다.
2. "작은도서관"이란「도서관	2. "작은도서관"이란「도서관
법」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	법」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
관을 말한다.	른 도서관을 말한다.
3. "도서관자료"란 <u>「도서관</u>	3 「도서관법」제
법」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	3조제2호
를 말한다.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능) 작은도서관의 기능은	제 5 조 (기 능)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도서관자료의 <u>수집·정리·보</u>	1 <u>수</u> 집·정리·보존
존 • 제공 • 열람 • 대출	·제공·열람·대출·상호대차
	<u>서비스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
<u>5</u> . (생 략)	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7조(설립 및 위탁) ① (생 략)	제7조(설립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	②
료에 관한 기준은 「도서관법 시행	「도서관법 시행령」
령」제3조와 같다.	제33조

③ (생략) <신 설>

제9조(운영인력) ① • ② (생 략)

-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 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자료의 교환・이관・폐기) 제13조(자료의 교환・이관・폐기)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 렴하여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등록, 변경등록 및 폐관)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 추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 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폐 관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.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인력) ① · ② (현행과 같 유)

-----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.

(1)위워회 자료를 교환·이관할 수 있으며,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 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. <신 설>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, 시설, 단체,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
제15조(독서진흥) ① 구청장은 구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,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, 교육 등에 참여한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.